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1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윤준병・민형배・박민규

이성윤 • 신영대 • 이춘석

박희승 • 허종식 • 정진욱

황명선 • 양부남 • 문진석

이재관 • 서삼석 • 박균택

김윤덕 · 안태준 · 복기왕

정동영 · 이원택 · 박수혂

안호영 의원(2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(國權)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·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 함을 목적으로 함.

이와 관련,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 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,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 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「상훈법」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9조의2(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건의에 관한 특례) 위원회는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「상훈법」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
	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
	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
	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
	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
	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
	행하여야 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
	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
	마련하여야 한다.
<u> </u>	제9조의2(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
	대한 독립유공 서훈 건의에 관
	한 특례) 위원회는 심의ㆍ의결
	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
	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
	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
	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
	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
	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
	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

## <u>야 한다.</u>